

# 예산총칙

## 2023년 동구정다운어르신복지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입·세출 예산(안)

- 제1조 (목적) 2023년 동구정다운어르신복지관의 예산은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회계년도) 2023년도 동구정다운어르신복지관의 3차추경 세입·세출예산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.
- 제3조 (출납기한) 2023년 동구정다운어르신복지관의 3차추경 세입·세출예산 출납사무는 2023년 12월 31까지 완료하여야 한다.
- 제4조 (예산의 규모) 2023년도 동구정다운어르신복지관의 3차추경 세입·세출예산 총액은 아래와 같으며 세입·세출 명세는 붙임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분	2차 추가경정	3차 추가경정	증감	비고
세입	6,276,485	6,321,445	44,960	
세출	6,276,485	6,321,445	44,960	

- 제5조 (예산의 전용)
- ①시설의 장은 예산의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전용 할 수 있다.  
다만, 관 간의 전용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구청장 승인을 얻어야 하며, 동일 관내 향간의 전용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관할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부칙 본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사회의 승인 이후 적용한다.

## 사회복지법인 나눔복지재단